

CFE REPORT

∴ CFE Report ∴

2019. 06. 03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안재욱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

<요 약>

화폐단위 변경(리디노미네이션)이란 단순히 기존 화폐단위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원화를 1,000분의 1로 화폐단위를 변경한다면 현재의 1,000원은 1원이 되는 것이다. 즉 ‘0’들을 떼어내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단순히 ‘0’들을 떼어낸다고 선언한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 표시되는 재화와 서비스 가격의 단위만 바뀔 뿐이다. 표시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단위만 바뀌기 때문에 재화와 서비스들의 상대가격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 따라서 소득, 물가, 환율, 수출입 등 경제의 실질변수 변화 또한 없다.

화폐단위 변경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3무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3무원칙은 신규화폐의 교환 량에 대한 무제한, 신규화폐의 교환 기간에 대한 무제한, 신규화폐의 교환의 무기명(익명성)을 의미한다.

3무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재산권이 침해된다. 재화와 서비스의 상대가격에 변화가 생겨 실질 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교환의 양과 교환의 기간에 대해 제한을 두게 되면 구 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을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교환 시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자신의 재산 상태가 들어날 것을 우려한 사람들이 이를 회피하려 함에 따라 경제가 왜곡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화폐단위 변경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화폐단위 변경에 따른 편익이 그 비용보다 크다면 실시할 수 있겠다. 그러나 화폐단위 변경을 실시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성이다. 정부에 대한 신뢰성이 없으면 실패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화폐단위 변경을 하면서 다른 정치적, 경제적 목적을 병행할 경우 반드시 심각한 경제적 충격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목 차>

I. 화폐단위 변경(리디노미네이션)의 의미

II. 화폐단위 변경과 화폐개혁

1. 화폐단위 변경과 화폐 개혁의 차이
2. 화폐단위 변경에 대한 오해와 진실

III. 화폐개혁 사례분석

1. 우리나라 국민들이 화폐단위 변경과 화폐개혁을 혼동하는 이유
2. 1953년 제1차 화폐개혁
3. 1962년 제2차 화폐개혁

IV. 화폐단위 변경의 동기

1. 외국의 사례에서 살펴본 화폐단위 변경의 동기
2. 화폐단위 변경의 동기에 대한 설명

V. 결론

참고문헌

I 화폐단위 변경의 의미

1. 화폐단위 변경(리디노미네이션)이란?

- 리디노미네이션은 단순히 기존 화폐단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함.
 - ▶ 예를 들어 원화를 1,000분의 1로 화폐단위를 변경한다면 현재의 1,000 원은 1원이 됨.
 - ▶ 즉 ‘0’들을 떼어내는 것임.
- 이렇게 단순히 ‘0’들을 떼어낸다고 선언한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음. 표시되는 재화와 서비스 가격의 단위만 바뀔 뿐임.
 - ▶ 표시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단위만 바뀌기 때문에 재화와 서비스들의 상대가격에 전혀 변화가 없음.
 - ▶ 따라서 소득, 물가, 환율, 수출입 등 경제의 실질변수 변화 또한 없음.

2. 화폐단위 변경의 성공 조건

- ‘3무원칙’이 지켜져야 함.
 - ▶ 신구화폐의 교환 량에 대한 무제한
 - ▶ 신구화폐의 교환 기간에 대한 무제한
 - ▶ 신구화폐의 교환의 무기명(익명성)
- ‘3무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재산권이 침해됨. 재화와 서비스의 상대가격에 변화가 생겨 실질 변수에 영향을 미침
 - ▶ 교환의 양과 교환의 기간에 대해 제한을 두면 구 화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재산을 모두 사용할 수 없게 됨.
 - ▶ 교환 시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자신의 재산 상태가 들어날 것을 우려한 사람들이 이를 회피하려 함에 따라 경제가 왜곡됨.
- 또 ‘3무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재화와 서비스의 상대가격에 변화가 생겨 실질 변수에 영향을 미침
 - ▶ 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재산상의 손해를 볼까 두려워 재산을 보존하려는 방법을 찾으려고 함. 그래서 금이나 실물 자산을 구입하거나, 달러와 같은 외화를 구입하려고 함.
 - ▶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금이나 실물의 가격이 오르고 환율도 오르게 됨.

- ▶ 이러한 상대가격 변화로 소득, 물가, 환율, 수출입 등 실질변수에 변동이 생긴.

II

화폐단위 변경과 화폐개혁

1. 화폐단위 변경과 화폐 개혁의 차이

- 화폐개혁은 아래와 같은 정치적, 경제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것임.
 - ▶ 인플레이션 억제
 - ▶ 산업자금 확보
 - ▶ 지하자금, 혹은 퇴장자금 양성화
-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보통 아래와 같은 방법을 사용함
 - ▶ 예금의 지급정지
 - ▶ 신규화폐 교환의 제한
 - ▶ 보유재산에 대한 과세
- 화폐개혁을 실행하기 위한 방법들은 모두 재산권을 제한하는 조치들임.
 - ▶ 따라서 사람들은 화폐개혁이 예상되면 재산상의 손실을 막기 위해 서둘러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 가치를 유지할 만한 재화를 구입해 놓으려고 함.
 - ▶ 그 과정에서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함.
- 화폐단위 변경이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고 화폐가치가 하락하는 이유는 단순한 화폐단위 변경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조치들을 동반한 화폐개혁 때문임.
 - ▶ 따라서 단순한 화폐단위 변경과 화폐개혁을 동반한 화폐단위 변경을 잘 구분해야 함.

2. 화폐단위 변경에 대한 오해와 진실

- 화폐단위 변경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 ▶ 단순한 화폐단위 변경으로는 인플레이션이 억제되지 않음
 - ▶ 인플레이션이 억제 되는 경우는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국가들이 화폐단위 변경을 하며 재정지출을 줄이는 재정개혁을 하고, 재정지출을 뒷받침했던 통화팽창을 줄이는 화폐개혁을 하기 때문임
 - ▶ 통화팽창을 줄이는 화폐개혁을 해야 인플레이션이 억제되는 이유

- ▶ 인플레이션 기에는 사람들이 화폐를 오랫동안 손에 쥐고 있으려고 하지 않음. 즉 화폐수요가 감소하고 화폐의 유통속도가 빨라짐.
 - ▶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킴.
 - ▶ 그러한 상태에 있는 국가에서 재정개혁을 동반한 화폐개혁 조치를 취하면 빨라졌던 화폐의 유통속도가 감소하고 화폐수요가 증가하여 인플레이션이 억제됨
 - ▶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화폐단위 변경을 하더라도 재정개혁을 수행하는 국가는 성공하고, 그렇지 않은 국가는 실패함.
 - ▶ 안정화를 위한 재정 및 통화정책이 수행되지 않으면 화폐단위 변경은 실패함
 - ▶ 그 대표적인 국가가 앙골라,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콩고민주공화국임
 - ▶ 앙골라: 1995년 화폐단위 변경; 당시 인플레이션율이 262%, 그러나 1996년 인플레이션율은 4,145%였음
 - ▶ 아르헨티나: 1985년 화폐단위 변경; 당시 인플레이션율 672%, 그러나 1987~1989년 인플레이션율이 3,080%였음
 - ▶ 아제르바이잔: 1992년 화폐단위 변경; 당시 인플레이션율 912%, 그러나 1993년 인플레이션율 1,129%였음.
 - ▶ 콩고민주공화국: 1993년 화폐단위 변경; 당시 인플레이션율 1,987%, 그러나 1994년 인플레이션율 2,377%였음.
- 화폐단위를 변경하면 인플레이션이 유발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 ▶ 이 주장 역시 잘못된 것임; 통화량이 증가하지 않는 한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음
 - ▶ ‘0’을 제거함에 따라 우수리가 남게 되어 이것을 반올림해야 함으로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는 주장이 있음; 이것은 소위 ‘센트’ 개념을 도입하면 반올림 할 필요가 없음.
 - ▶ 화폐환상 때문에 물가가 오른다는 주장이 있음. 즉 화폐단위를 변경하면 1,000원이 1원이 되므로 물가가 싸진 것처럼 느껴져 사람들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킴에 따라 물가가 상승한다는 것임.
 - ▶ 이 주장 역시 잘못된 것임. 화폐단위를 변경하면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의 단위도 변화하지만 사람들이 받는 소득의 단위 역시 변함. 만약 화폐환상이론이 작용한다면 사람들은 소득 하락으로 느껴져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함. 그렇게 되면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단위변경 효과와 소득 단위 변경 효과가 상쇄되어 버림.
 - ▶ 화폐단위 변경은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의 단위뿐만 아니라 소득의 단위

도 그대로 변하기 때문에 상대적 비율에 전혀 변화가 없음. 따라서 화폐단위 변경에 따른 물가 변동은 없음.

- 화폐단위를 변경하면 국력이 향상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 ▶ 국력은 그 나라의 경제력, 국민들의 준법정신, 법치, 올바른 정치와 제도, 문화 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화폐단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님.
 - ▶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0’을 3개를 지우지 말고 5개를 지우면 더 국력이 올라 갈수 있는지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음.

- 화폐단위를 변경하면 지하자금이 양성화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 ▶ 이것은 화폐단위 변경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음.
 - ▶ 화폐단위 변경을 통해 지하자금 양성화를 하려면 화폐단위 변경의 성공 조건의 ‘3무원칙’을 포기해야 함.
 - ▶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화폐단위 변경을 하면 성공할 수 없음.
 - ▶ 사실 지하자금은 높은 세금, 과도한 규제 때문에 생김. 그러므로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려면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옳은 방향임. 그렇게 하면 불법거래, 부정부패가 많이 사라져 지하자금이 상당히 줄어들게 됨,

- 화폐단위를 변경하면 거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 ▶ 이 주장은 옳다고 봄.
 - ▶ 화폐 단위 축소에 따른 거래 편의 제고와 회계장부 기장 처리의 간편화라는 편익은 분명히 있음.

- 화폐단위를 변경하면 새 화폐 제도에 따른 비용이 든다는 주장에 대해서
 - ▶ 이 주장은 사실임
 - ▶ 새 화폐의 디자인, 컴퓨터 시스템 변경, 현금처리 자동화기기 대체 및 변경에 따른 제반 비용이 들어감.

III

화폐개혁 사례분석

1. 우리나라 국민들이 화폐단위 변경과 화폐개혁을 혼동하는 이유: 역사적 경험 때문

- 우리나라는 두 차례 화폐개혁을 단행했으며, 화폐개혁을 하면서 화폐단위 변경을 병행했음.
 - ▶ 제1차 화폐개혁: 1953년 2월
 - ▶ 제2차 화폐개혁: 1962년 6월

2. 1953년 제1차 화폐개혁

- 화폐개혁의 목적(<표1> 참조)
 - ▶ 인플레이션 근본적인 수습
 - ▷ 1945년 해방 이후 한국전쟁 발발 이전까지 생산자 물가지수 500배 상승
 - ▷ 한국 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부터 1차 통화개혁 직후인 1953년 3월까지 생산자물가지수 17배 상승(<표2> 참조)
 - ▶ 유엔군 대여금 원환 상환 촉진 및 대외원조 증대 촉구

<표1> 우리나라 화폐개혁의 주요 목적 및 내용

	1953년 2월 제1차 화폐개혁	1962년 6월 제2차 화폐개혁
주요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플레이션 근본적인 수습 유엔군 대여금 원환 상환 촉진 및 대외원조 증대 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성자금 및 과잉구매력의 장기저축 전환을 통한 투자재원 활용 인플레이션 방지
긴급 통화 조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칭단위: 圓(원) à 圓(환) 호칭가치: 1/100 절하(100圓=1圓) 圓 표시화폐의 유통과 거래 금지 신 환화표시 화폐를 발행 유통 구권, 지급지시 등 금융기관 예입 생활비로 1인당 5백환 신권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칭단위: 圓(환)에서 원으로 변경 호칭가치: 1/10 절하 (10圓=1원) 圓 표시 화폐의 유통과 거래를 금지 신 원화표시 화폐를 발행 유통 구권, 지급지시 등 지정금융기관 예입 생활비 세대 당 500원 한도 신권 지급
긴급 금융 조치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원화표시 금액을 1/100 환화 표시로 변경 구권예금은 예입액x체감률로 자유계정으로 전환 나머지 금액의 1/4은 3년 만기 특별국채저금으로 3/4는 2년 만기 특별정기예금으로 봉쇄 2.14 이전 재래예금 중 저축성예금은 자유계정으로 전환, 기타예금은 예입액x체감률 만큼 자유계정으로 전환 나머지는 1년 만기 특별정기예금으로 봉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환화표시 금액을 1/10 원화표시로 변경 구권예금은 금액구분과 체증율을 적용하여 봉쇄계정으로 전환 나머지 자유계정으로 전환 기한 1년 미만 재래 저축성예금: 계좌당 3만원 기초공제 후 소정의 비율로 봉쇄하고 나머지는 자유계정 1년 미만 저축성예금은 자유계정으로 전환(6.30) 재래 요구불예금은 3만원 기초 공제한 후 구권 금액별 체증율을 적용하여 봉쇄 봉쇄예금은 한은 지준금으로 예치, 연 15% 이자지급, 산업개발공사 주식으로 전환

출처: 배영목(2010).

<표2> 생산자 물가지수(1945~1962년)

	1945.6=100	1946.3=100	1950.6=100
1945.6	100		
1946.3	4,711	100	
1950.6	49,854	1,044	100
1953.3	864,427	18,113	1,734
1961.6	3,782,767	79,273	7,588
1962.6	4,078,398	145,367	8,181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 DB.

출처: 배영목(2010)에서 재인용.

● 화폐개혁의 주요 내용

- ▶ 호칭단위: 圓(원)에서 圀(환)으로 변경
- ▶ 호칭가치: 1/100 절하(100圓=1圀)
- ▶ 圓 표시화폐의 유통과 거래 금지
- ▶ 신 환화표시 화폐를 발행 유통
- ▶ 구권, 지급지시 등 금융기관 예입
- ▶ 생활비로 1인당 5백환 신권지급
- ▶ 구권예금은 (예입액 x 체감률)로 자유계정으로 전환; 나머지 금액의 1/4은 3년 만기 특별국채저금으로 3/4는 2년 만기 특별정기예금으로 봉쇄
- ▶ 2.14 이전 재래예금 중 저축성예금은 자유계정으로 전환, 기타예금은 (예입액 x 체감률) 만큼 자유계정으로 전환; 나머지는 1년 만기 특별정기예금으로 봉쇄

● 화폐개혁 시행 결과(<표3> 참조)

- ▶ 1953년 통화개혁 이전의 구권발행고는 11,367억圓, 이 중 11,066억圓이 회수됨. 미회수액은 301억圓으로, 구 발행권의 2.6%에 불과. 화폐교환은 순조롭게 이루어졌음.
- ▶ 이 구권 회수액 11,066억圓에 지불지시 예입 1,197억圓을 추가하면 총 12,263억圓(122.6억圀)이 환수되었음.
- ▶ 긴급통화조치 대상 중 72.9%인 8,945억圓만이 긴급금융조치 대상. 이 중에서 6,737억圓(67.37억환)이 자유계정으로 전환되었음. 이는 전체

금액 대비 54.9%이고, 긴급금융조치대상금액 대비 75.3%임.

- ▶ 나머지 금액 중에서 특별 정기에금 또는 국채로 동결된 금액은 1,285억 원(12.85억환)으로 전체 대비 10.5%, 금융조치대상금액 대비 14.4%에 불과.
- ▶ 정부는 원래 긴급금융조치대상 금액 89.5억환의 33.5%를 동결하고자 하였으나 정기에금 및 국채로 동결된 금액은 그 목표치의 42.8%인 12.9억환에 불과하였음.
- ▶ 통화개혁을 통한 예금 동결은 기대에 못 미침.

<표3> 제1차 화폐개혁 시행 결과

항목		금액	구성비	전체대비비율
구권발행고(1953년 2월 14일)		11,367		
통화조치수입액 (A)		12,263		100.0
환수조치제외 금액 (B)		2,205		18.0
자연인 일반법인 예입금액	소계 (A-B)	10,056	100.0	82.0
	생활비지출	6,410	63.7	52.3
	구권예입계정 (C)	4,375	43.5	35.7
	금융기관 금전채무계정 (D)	4,570		37.3
긴급금융조치 대상금액 (C+D)	소계	8,945	100.0	72.9
	조치미제금액 (E)	98	1.1	0.8
	체납국세납부 (F)	382	4.3	3.1
	연체대부변제 (G)	330	3.7	2.7
	특별정기에금 및 국채 (H)	1,285	14.4	10.5
	(E)+(F)+(G)+(H)	2,095	23.4	17.1
	특수계정전환액	113	1.3	0.9
	자유계정전환액	6,737	75.3	54.9

자료: 한국은행(1955), 『경제연감』 145~48, 한국은행조사부 (1954), p. 7 · 12~13
출처: 배영목(2010)에서 재인용.

● 화폐개혁 효과

- ▶ 통화개혁을 통한 예금 동결은 기대에 못 미침.
- ▶ 그러나 많지는 않았지만 체납국세 징수와 연체대출금 회수에 도움이 되

었고, 원조 증대와 유엔군 대여금 상환 촉진에도 도움이 되었음. 특히 유엔군 대여금 중에서 8,580만 달러(57.1억환)가 상환되었음.

- ▶ 물가 상승세는 통화개혁 이후에도 사라지지 않았음; 팽창적인 통화정책의 결과로 그 상승세가 강화되었음.

2. 1962년 제2차 화폐개혁

● 화폐개혁의 목적(<표1> 참조)

- ▶ 음성자금 및 과잉구매력의 장기저축 전환을 통한 투자재원 활용
- ▶ 인플레이션 방지
 - ▷ 1961년 통화증가율이 40.4%나 되고 도매물가상승률이 13.2%로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었음 (<표4> 참조). 그러나 화폐개혁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했던 것만큼 인플레이션이 심각했는지는 의문임.

● 화폐개혁의 주요 내용

- ▶ 호칭단위: 圓(환)에서 원으로 변경
- ▶ 호칭가치: 1/10 절하 (10圓=1원)
- ▶ 圓 표시 화폐의 유통과 거래를 금지
- ▶ 신 원화표시 화폐를 발행 유통
- ▶ 구권, 지급지시 등 지정금융기관 예입
- ▶ 생활비 세대 당 500원 한도 신권 지급
- ▶ 구권예금은 금액구분과 체증율을 적용하여 봉쇄계정으로 전환, 나머지 자유계정으로 전환
- ▶ 기한 1년 미만 채래 저축성예금: 계좌당 3만원 기초공제 후 소정의 비율로 봉쇄하고 나머지는 자유계정으로 전환 (<표5> 참조).
- ▶ 채래 요구불예금은 3만원 기초 공제한 후 구권 금액별 체증율을 적용하여 봉쇄
- ▶ 봉쇄예금은 한은 지준금으로 예치, 연15% 이자지급, 산업개발공사 주식으로 전환

<표4> 통화증가율, 도매물가 상승률, 경제성장률(1960~1966년)

	통화증가율	도매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1960	5.3	10.7	2.3
1961	40.4	13.2	4.2
1962	18.6	9.4	3.5
1963	1.3	20.6	9.1
1964	17.5	34.6	8.3
1965	33.2	10.0	7.4
1966	30.1	8.9	13.4

<표5> 예금 금액별 봉쇄계정으로의 전환 비율(「긴급금융조치법」 제8조1항)

금액	전환비율
3만원 이하	0%
3만원 ~ 5만원	20%
5만원 ~ 10만원	30%
10만원 ~ 50만원	50%
50만원 ~ 100만원	65%
100만원 ~ 500만원	85%
500만원 ~ 1,000만원	95%
1,000만원 초과	100%

● 화폐개혁 시행 결과(<표6> 참조)

- ▶ 긴급통화조치에 따라 회수된 화폐 총액은 158억 원이었음. 1962년 6월 9일 화폐발행액 165억 원이었으므로 총화폐액의 95.7%가 회수된 셈임.
- ▶ 봉쇄계정으로 동결된 자금은 총 98억 원이었음. 구권예금에 예입된 금액이 84억 원, 그 중에서 봉쇄계정으로 들어간 금액은 11억 원, 재래예금에 예입된 449억 원 중에서 봉쇄계정으로 들어간 금액이 87억 원이었음(<표6> 참조).
- ▶ 이 총 98억 원은 1차5개년계획에서 내자도입으로 상정한 투자액의 4%에 불과했음

- ▶ 이것은 정부의 예상과는 달리 여유 자금을 현금으로 퇴장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던 것을 보여줌.

<표6> 전국 봉쇄예금액(1962년 6월 23일 현재)

예금 종류	금액	구성비(%)	대상(예금잔고)
구권예금	11.25억 원	11.5	84억 원
재래예금	86.81억 원	88.5	449억 원
합 계	98.06억 원	100.0	
저축성예금	16.45억 원	16.8	
요구불예금	81.61억 원	83.2	

자료: 한국은행조사부(1962) 『긴급통화조치종합보고서』, 16-18쪽.

● 화폐개혁 효과

- ▶ 여유 자금을 현금으로 퇴장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음.
- ▶ 비밀리에 추진해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화폐개혁은 큰 혼란 초래. 은행이 문을 연 11일(월요일)에 이른 새벽부터 은행 앞에는 돈을 바꾸려는 시민들의 행렬이 장사진을 이루었고, 새 화폐가 제대로 나돌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었음.
- ▶ 산업활동 크게 위축; 시중에 유동성 부족현상이 발생; 중소기업 가동률이 통화개혁 전의 45%에 불과했음. 그리하여 예금봉쇄를 완화했음.
- ▶ 한국은행은 봉쇄예금을 담보로 한 긴급융자 실시했으며, 상업어음 할인에 대한 대출 최고한도제를 폐지하는 등 통화공급을 크게 확대했음. 그리고 요구불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종래의 14%에서 법정최저율인 10%로 인하했음.
- ▶ 결국 33일 만인 7월 13일에 정부는 봉쇄계정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해제했음.
- ▶ 퇴장자금을 끌어내 산업자금으로 활용하겠다는 '화폐개혁'은 실패했음.

IV

화폐단위 변경의 동기

1. 외국의 사례에서 살펴본 화폐단위 변경의 동기(외국의 화폐단위 변경 사례는 <표7> 참조)

- 하이퍼인플레이션
- 정부가 정치적 또는 정책적 목적을 위한 재원 확보(즉 보유재산에 대한 과세)

2. 화폐단위 변경의 동기에 대한 설명

1) 하이퍼인플레이션

- 화폐단위 변경을 하이퍼인플레이션 기간이 끝났다는 신호를 보내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 ▶ 하이퍼인플레이션은 통화량을 축소와 긴축재정으로 해결
 - ▶ 화폐 단위 변경은 상징적 의미
 - 국민들과 투자자들에게 인플레이션을 퇴치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을 보여줌
 - 새로운 화폐는 안정화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님.
 - ▶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하락은 화폐단위 변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 터키 사례
 - 2004년: 1972년 이후 한 자리 수 인플레이션
 - 6 제로 삭제 2005년부터 실시
 - 2001년 경제위기를 겪은 후 안정화 정책을 실시했었음.
 - ▶ 러시아 사례
 - 1998년 1월, 3 제로 삭제
 - 1993년 875%, 1995년 200%, 1997년 15%로 인플레이션 하락 후 화폐단위 변경 실시
- 화폐단위 변경을 안정화 과정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
 - ▶ 국민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변화시키기 위함
 - ▶ 이스라엘이 이 경우에 해당함. 1985년 9월 1/1,000 shekel과 함께 화

폐개혁 실시. 당시 인플레이션율이 386%였음.

- 정부가 정치적 또는 정책적 목적을 위한 재원 확보하기 위해 하는 경우
 - ▶ 매우 짧은 신규 화폐 교환 기간을 설정
 - ▶ 바꾸지 못해 가치가 없어진 화폐는 실질적으로 정부의 수입이 됨; 이것은 정부의 간접적인 시노리지가 됨.
 - ▶ 1976년 라오스: 신규 화폐 교환 기간 1일
 - ▶ 1988년 니카라과: 신규 화폐교환 기간 3일
 - ▶ 1991년 소련: 신규 화폐 교환기간 3일

<표7> 외국의 화폐단위 변경 사례

Country	Years & Annual Inflation Rates	Redenomination?
Albania	1992(226%)	No.
Angola	1992(299%), 1993(1379%), 1994(949%), 1995(2672%), 1996(4145%), 1997~2002(average, 194%)	Yes, 1995.
Argentina	1975~1982; average annual rate 267%	Yes, 1983.
Argentina	1983(344%), 1984(627%), 1985(672%)	Yes, 1985.
Argentina	1987, 1988, 1989(3080%), 1990(2314%), 1991(172%)	Yes, 1992.
Armenia	1994(4962%), 1995(176%)	No.
Azerbaijan	1992(912%), 1993(1129%), 1994(1665%), 1995(412%)	Yes, 1992.
Belarus	1993(1190%), 1994(2221%), 1995(709%)	Yes, 1992.
Belarus	1999(294%), 2000(169%)	Yes, 2000.
Bolivia	1981~1986; peaked at 11749% in 1985.	Yes, 1987.
Brazil	1981~1985, average annual rate 151%.	Yes, 1986.
Brazil	1986(147%), 1987(228%), 1988(629%), 1989(1431%)	Yes, 1989.
Brazil	1990(2948%), 1991(433%), 1992(952%), 1993(1928%), 1994(2076%)	Yes, 1993 and 1994.
Bulgaria	1991(338%), 1996(122%), 1997(1058%)	Yes, 1999.
Chile	1973(362%), 1974(505%), 1975(375%), 1976(212%)	Yes, 1975.
Congo, Dem. Rep.	1979(101%), 1989(104%), 1991(2154%), 1992(4129%), 1993(1987%)	Yes, 1993.
Congo, Dem. Rep.	1994(23773%), 1995(542%), 1996(542%), 1997(176%)	Yes, 1998.
Congo, Dem. Rep.	1999(285%), 2000(514%), 2001(360%)	No.
Croatia	1992(625%), 1993(1500%), 1994(107%)	Yes, 1994.
Georgia	1995(163%)	Yes, 1995.
Ghana	1977(116%), 1981(117%), 1983(123%)	No.
Indonesia	1962(131%), 1963(146%), 1964(109%), 1965(307%), 1966(1136%), 1967(106%), 1968(129%)	No.
Israel	1980(131%), 1981(117%), 1982(120%), 1983(146%), 1984(374%), 1985(305%)	Yes, 1980 and 1985.
Kazakhstan	1994(1877%), 1995(176%)	No.
Laos	1999(128%)	No.
Latvia	1992(243%), 1993(109%)	Yes, 1993.
Labanon	1987(488%), 1988(128%)	No.
Lithuania	1993(410%)	Yes, 1993.
Macedonia	1994(126%)	Yes, 1993.
Mexico	1983(102%), 1987(132%), 1988(114%)	Yes, 1993.
Mongolia	1993(268%)	No.
Nicaragua	1985~1991, Highest in 1989(4770%), 1990(7485%) and 1991(2945%)	Yes, 1998.

Country	Years & Annual Inflation Rates	Redenomination?
Peru	1983(112%), 1984(110%), 1985(163%)	Yes, 1985.
Peru	1988(667%), 1989(3399%), 1990(409%)	Yes, 1991.
Poland	1982(104%), 1989(245%), 1990(555%)	Yes, 1995.
Romania	1991(231%), 1992(211%), 1993(255%), 1994(137%), 1997(155%)	Yes, 2005.
Russia	1993(875%), 1994(308%), 1995(197%)	Yes, 1998.
Sierra Leone	1987(179%), 1990(111%), 1991(103%)	No.
Sudan	1991(124%), 1992(118%), 1993(101%), 1994(115%), 1996(134%)	Yes, 1992.
Suriname	1993(144%), 1994(368%), 1995(236%)	No.
Turkey	1980(110%), 1994(106%)	Yes, 2005.
Uganda	1981(109%), 1985(158%), 1986(161%), 1987(200%), 1988(196%)	Yes, 1987.
Ukraine	1993(4735%), 1994(891%), 1995(377%)	Yes, 1996.
Uruguay	1968(125%)	Yes, 1975.
Uruguay	1990(113%), 1991(102%)	Yes, 1993
Zambia	1989(123%), 1990(107%), 1992(166%), 1993(183%)	
Zimbabwe	2002(140%), 2003(estimated 1000%)	No.

* Inflation data from the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annual percent change in consumer prices.

There are additional redenominations, often in response to high levels of inflation; but comparable inflation data are not available. These include Brazil (redenominates 1967 and 1970), Estonia (1992), Kyrgyz Republic (1993), Moldova (1993), Uzbekistan (1993), and Vietnam (1975 and 1985).

출처: Mosley, L. (2005).

V

결론

- 우리나라에서 화폐단위 변경 실시해야 하는가?
 - ▶ 화폐단위 변경에 따른 편익이 그 비용보다 크다면 실시할 수 있음.
 - ▶ 그러나 화폐단위 변경을 실시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에 대한 신뢰성임. 정부에 대한 신뢰성이 없으며 실패할 것임.
 - ▶ 뿐만 아니라 화폐단위 변경을 하면서 다른 정치적, 경제적 목적을 병행할 경우 반드시 심각한 경제적 충격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함.
 - ▶ 화폐단위 변경은 현 시점에서 우리 경제에서 시급하고 긴박한 이슈가 아님. 더 긴박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임.
 - ▶ 따라서 현 시점에서 화폐단위 변경을 실시하는 것은 시기상조임.

참고 문헌

- 배영목(2010). “우리나라 통화개혁의 비교연구”, 『경제학연구』, 113~141.
- 안재욱(2014).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한국경제신문, 다산칼럼>, 2월 10일.
- 안재욱(2017). “1962년 화폐개혁”, 『기적의 한국경제 70년사』, 55~64, 북앤피플.
- 한국은행조사부(1962), 『긴급통화조치종합보고서』, 16~18쪽.
- Bello, D.(2010). The Economics of Currency Redenomination: An Appraisal of CBN Redenomination Proposal, MPRA Paper No. 23195.
- Mosley, L. (2005): “Dropping Zeros, Gaining Credibility? Currency Redenomination in Developing Nations”, available at http://convention2.allacademic.com/getfile.php?file=apsa05_proceeding/2005-09-05/40104/apsa05_proceeding_40104.pdf.